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